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마포 제1선거구 김상훈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중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8월 제정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소연료공급 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광고물 표시방법, ▲광고물의 심의대상 구분, ▲광고물의 재료·표시방법·규격, ▲허가·신고 수수료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